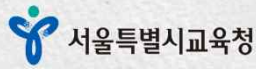


2026학년도

# 사립학교 교원 인사 교감 연수

(1차) 2026. 3. 3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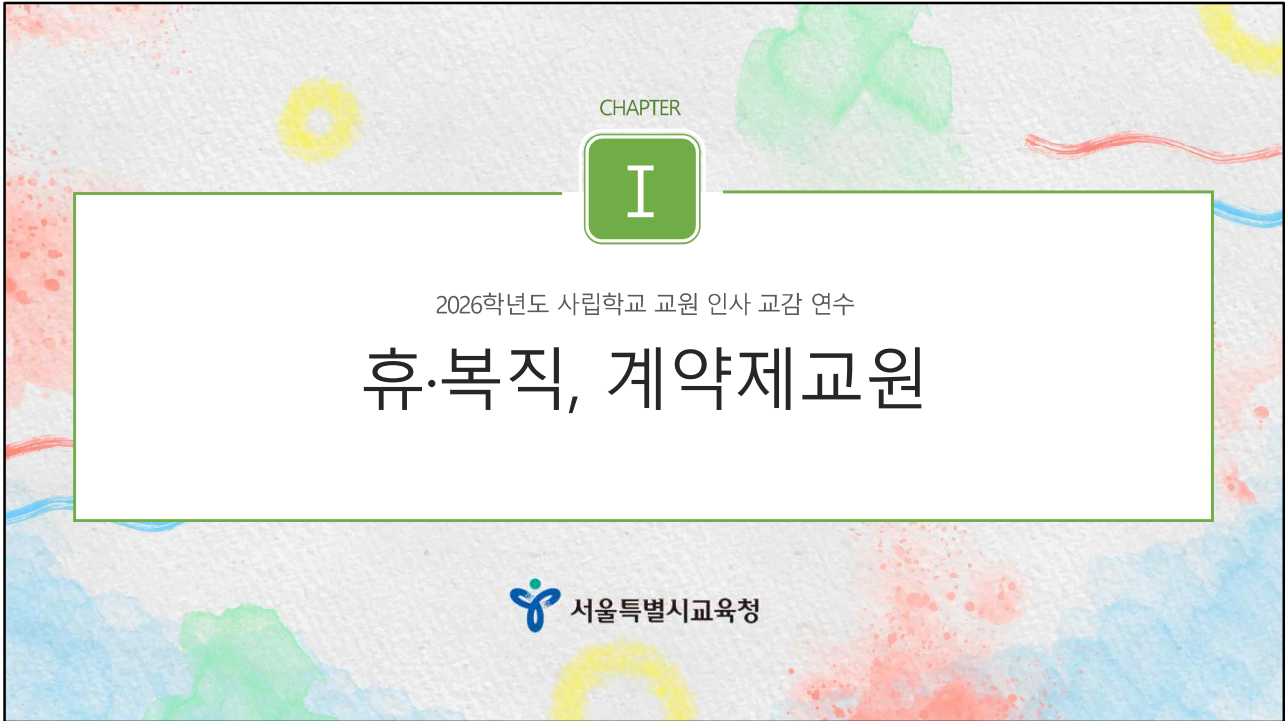
(2차) 2026. 3. 31.(화)



2026 사립학교 교원 인사 교감 연수

## 차 례

- ① 휴·복직, 계약제교원
- ② 복무와 징계
- ③ 나이스 교원인사 권한
- ④ 신규교사 채용 사전협의
- ⑤ 신규교사 위탁 선발 실무
- ⑥ 교장 자격인정, 교장·교감 자격연수, 교장·교감 임용



## 휴·복직

### 휴직의 종류

- 근거: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휴직의 종류)
- 원칙: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5. 유학 6. 고용 8. 연수 9. 가사 10. 동반 12. 자출연수

- 예외: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질병(불임·난임포함) 2. 병역  
3. 생사불명 4. 법정의무수행  
11. 노조전임

7. 육아 7의2. 입양

## 휴·복직

### 직권휴직의 종류

| 1호   | 2호   | 3호   | 4호     | 11호  |
|------|------|------|--------|------|
| 질병휴직 | 병역휴직 | 생사불명 | 법정의무수행 | 노조전임 |

### 청원휴직의 종류

| 5호     | 6호     | 7호       | 8호     |
|--------|--------|----------|--------|
| 유학휴직   | 고용휴직   | 육아(입양)휴직 | 연수휴직   |
| 9호     | 10호    | 12호      | 13호    |
| * 가사휴직 | 해외동반휴직 | 자율연수휴직   | 기타(정관) |

## 휴·복직 Q&A

### 육아휴직 신청이 거부될 수 있나요?

- ☑ 육아휴직은 대상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사용 가능
-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 승인하나,
- ☑ 육아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함

### 사립학교 교원의 돌봄휴직은?

- ☑ 교육공무원법 개정(2023.4.19.)으로 가족의 부양 또는 돌봄을 위한 휴직 가능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봄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 사립학교법도 동일한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진행 중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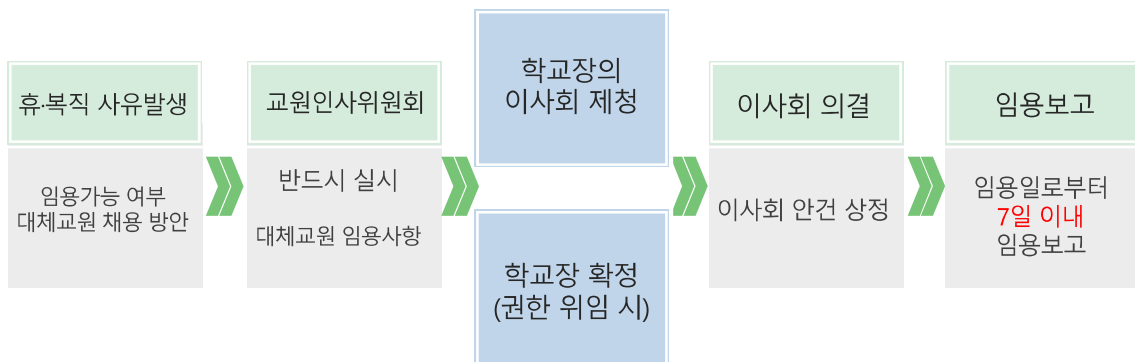
## 휴·복직 Q&A

### 휴직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 경우는?

- ☑ 해외체류 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휴직의 목적 달성에 부합 여부가 중요!
- ☑ 육아휴직
  - 육아대상인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제재할 수 없지만,
  - 통상의 기간(15일 초과)시 경위 확인 또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 ☑ 가사휴직 - 돌봄대상자를 동반한 요양 목적인 경우 출국 가능
- ☑ 질병휴직
  - 치료 또는 요양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필요

## 휴·복직

### 휴·복직 업무 흐름



## 휴·복직

### 휴직자 복무 관리

- 근거: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6조(휴직자 실태 파악)
- 목적: 휴직자 복무 관리 강화,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사례 방지

### 복무관리 실태 점검

####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휴직자 준수 사항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휴직자 실태 보고서 제출

매년 6.30. / 12.31. 2회 제출  
휴직자 본인이 작성

#### 실태 점검 및 보고

휴직 실태 전반적 점검  
적발 시  
소속 교육(지원)청 보고

## 계약제교원

### 채용 요건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 (1호)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2호)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 (3호)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 (4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인정범위 외 기간제교원 채용 불가!**

- 선택적 교과 운영
- 특성화학교 운영 및 전환을 위한 한시적 교과 운영
- 명예퇴직 또는 갑작스러운 의원면직으로 신규 공개 채용 일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
- 학급 감축에 따른 한시적 교과 운영

## 계약제교원

### 채용 전 확인사항

#### CHECK 1

교원의 정·현원에 맞게!  
교장 또는 교감 직무대리자 대체  
채용 불가

#### CHECK 2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인정 범위 외 채용  
불가

#### CHECK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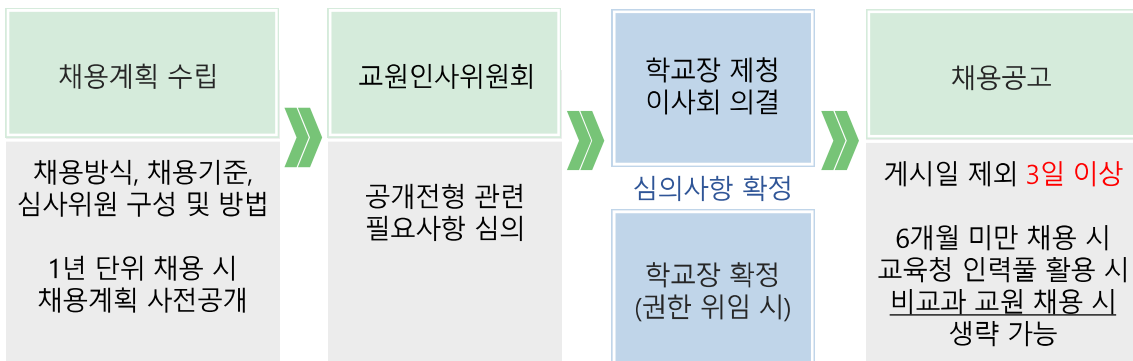
채용 과목과 소지 자격증 일치 확인

#### CHECK 4

교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 개최 일정 확보  
이사회 의결 전 계약일자로 소급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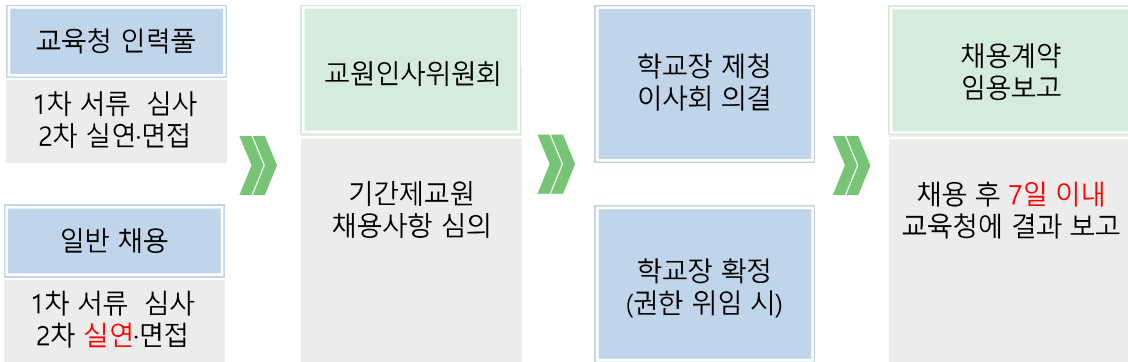
## 계약제교원

### 채용절차



## 계약제교원

### 채용절차



## 계약제교원

### 채용 상한 연령

▣ 원칙: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

#### ▣ 채용 상한 연령

|       | 2025학년도                            | 2026학년도                            |
|-------|------------------------------------|------------------------------------|
| 구분    | 기간제교원+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시간강사                         |
| 1차 공고 | 65세까지(1학기: 60년 3월생, 2학기: 60년 9월생~) | 65세까지(1학기: 61년 3월생, 2학기: 61년 9월생~) |
| 2차 공고 | 69세까지(1학기: 56년 3월생, 2학기: 56년 9월생~) | 69세까지(1학기: 57년 3월생, 2학기: 57년 9월생~) |

▣ 65세가/69세가 도래하기 전까지

## 계약제교원

### 연장계약

- 
- 2026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p.26)
- ▶ 동일교원(초등) 또는 동일교과 결원
  - ▶ 계약기간 사이의 공백 없이
  - ▶ 기존에 공개채용으로 채용된 경우
  -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 연장계약 임용보고
  - ▶ 기존 계약과는 다른 새로운 계약
  - ▶ 계약서 재작성&호봉재획정
  - ▶ 4년 근무 후에는 퇴직처리
  - ▶ 연장계약은 최대 3년 가능(총4년)

## 계약제교원 Q&A

### 채용 구비서류 종류와 보관기간은?

- ☑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p.5 계약제교원 임용 시 구비서류 참조
-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혼인여부, 출신지역, 고교생활기록부, 대학성적증명서)
- ☑ 채용서류 보관기간
  - 탈락자의 서류는 공고 시 고지한 반환기간(14일~180일) 경과 후 즉시 파기
  - 합격자의 채용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 **준영구**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리기준표(2024)

## 임용보고

### 임용보고 수신처

-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 고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3-4호, 2023.7.1.)

### 학교급별 임용보고 수신처(2024년 변경)

####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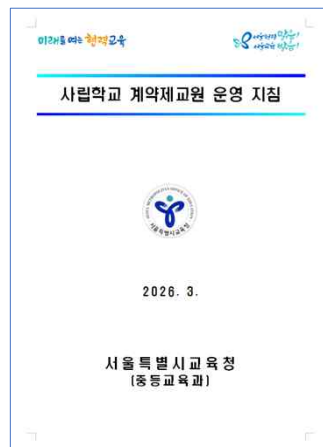
#### 중학교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 고등학교 특수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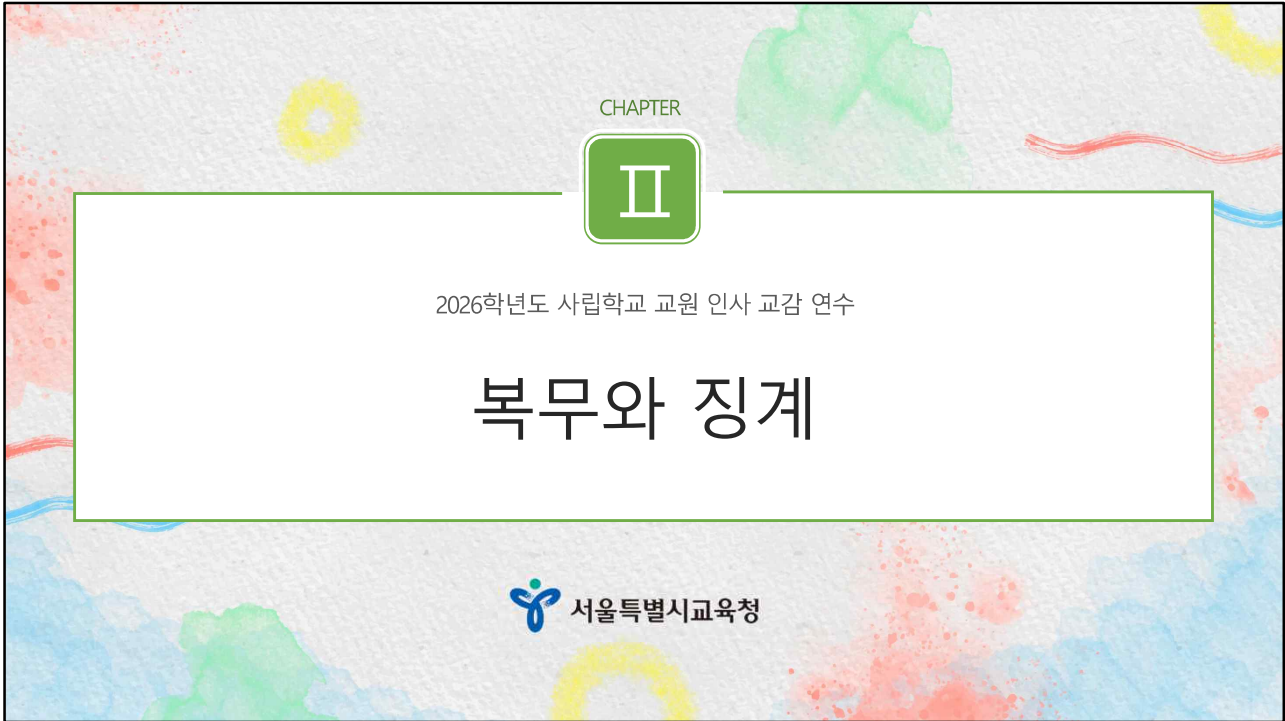
본청 중등교육과

## 계약제교원 관련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부서홈페이지(중등교육과)> 부서업무방

(<https://buseo.sen.go.kr/buseo/bu13/index.do>)



2026 사립학교 교원 인사 교감 연수

## 복무

### 사립교원의 복무

-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 교원의 복무 관련 안내 공문 등 참고

## 복무

### 휴업일 중 교원의 복무

- 출근
- 41조 연수

| 구분                     | 절차   |
|------------------------|--|
| 휴업일 중 41조 연수           | 개인별 근무상황 나이스로 승인 받기<br>- 1일 단위 사용 원칙(단, 방학 중에는 시간 단위 사용 가능)<br>- 단축 근무, 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                 |
| 고사 기간 중 41조 연수<br>(중등) | 1. 부서(학년, 교과 등)별 연수계획서 작성<br>2. 학교장의 계획서 사전 승인<br>3. 개인별 근무상황 나이스 승인 받기(개인별 상신)<br>※ 일부 학년만 고사 운영 시 41조 연수 사용 불가 |

## 복무

### 근무시간 외 근무

-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음
  - 방과후교육활동, 자율학습지도
  - 등·하교 및 방과후의 학생 생활지도
  - 학사 사무처리 등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당 지급은 **1일(8시간) 근무 후**, 1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하고 남은 시간을 정액분 10시간분과 합산해 산정
-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 종료 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휴가는 일수로 계산)
- 해외 출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인정 불가

## 복무

### 휴가

- 종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일반 원칙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병가, 유산·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일수(토,공휴일 포함)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복무

### 연가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계/동계 및 학기말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수업일 중 연가를 쓰고자 하는 교원은 **제1호~제9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업무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실시
- **학습연구년, 서울교육연구년 특별연수 파견교사**의 연가 일수 산정: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서 제외

## 복무

### 연가

- ☑ (제1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 ☑ (제2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 ☑ (제3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4호)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제5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 ☑ (제6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 ☑ (제7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 ☑ (제8호) **본인 자녀의 입영일(교원은 연가로 써야함).**  
지방공무원은 특별휴가 중 '자녀군입영휴가' 가능)
- ☑ (제9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복무 Q&A

### 수업일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 사용 시 신청 방법은?

-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사유란에 "제1호", "제2호" 등 해당하는 호를 입력
- ☑ 제9호 사유의 경우 학교장이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9호" 를 선택한 후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
  - \*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 나이스 신청 시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

## 복무 Q&A

신규교사의 연가일수 산정 시, 이전 기간제교사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포함하나요?

**아니요.**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의 연월일수를 적용함.(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복무

### 병가

- 일반 병가 연 60일
- 공무상 병가 연 180일, 단 동일한 사유에는 연도 구분 없이 180일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도 가능함
  -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증명서나 확인서만으로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복무

## 특별휴가

○ 특별휴가(수시 개정 항목으로 최신 기준 확인 필수)

| 구분             | 대 상 | 일수   | 휴무토요일<br>/공휴일<br>산입여부 |        |   |
|----------------|-----|--|-----------------------|--------|---|
| 경조사<br>휴가      | 결혼  | 본인   | 5                     | ×      |   |
|                |     | 자녀   | 1                     | ×      |   |
|                | 출산  | 배우자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기관장 반드시 승인)<br>▶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에 한해 분할 사용<br>▶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25일 가능<br>(이때 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에서 5회 분할 사용 가능) |                       | 20(25) | × |
|                |     | 입양휴가   | 본인                    | 20     | × |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 5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 3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 3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3  | ×                     |        |   |

※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복무

## 특별휴가

| 구분       | 대 상   | 일수          | 휴무토요일<br>/공휴일<br>산입여부 | 구분             | 대 상   | 일수     | 휴무토요일<br>/공휴일<br>산입여부 |
|----------|---|-------------|-----------------------|----------------|---|--------|-----------------------|
| 출산휴가     | 임신중인 공무원 출산전후 ※ 출산 전 45일(60일) 초과 금지<br>▶ 미숙아 출산 시 휴가일수 10일 추가, 둘 이상 출산 시 30일 추가<br>▶ 유·사산휴가 일수 확대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br>▶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공무원은 3일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사용할 수 있음(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 90(120)     | ○                     | 수업휴가           | 방송대 출석수업 연가일수 초과한 출석수업 기간(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        | ×                     |
|          |   |             |                       | 재해구조휴가         | 재해피해 교원 및 재해구조 봉사활동 참여 교원   | 5일 이내  | ×                     |
| 난임치료사술휴가 |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마다  | 총2일         | ×                     | 가족돌봄휴가         | 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 돌봄이 필요한 교원<br>▶ (유급)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의 자녀)수시일 부여(시간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br>▶ (무급) 유급 휴가 포함 10일 이내(월단위 사용만 가능)<br>▶ 증명서류 제출 필수 | 연간10일  | ×                     |
|          |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은 받는 경우, 시술마다  | 총3일         |                       | 임신검진휴가         | 임신한 여성공무원<br>▶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br>▶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신청 가능<br>▶ 임신 검진 확인 증명자료 제출   | 10일 이내 | ×                     |
|          | ▶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마다   | 총4일         |                       | 임신검진<br>동행휴가   |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br>▶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 내(반일 또는 1일 단위 사용 가능)  | 10일 이내 | ×                     |
|          | ▶ 남성공무원은 정자채취일 당일   | 1일          |                       |                |   |        |                       |
| 여성보건휴가   | ▶ 생리기간 중 휴식(무급으로 처리)  | 월 1일        | ×                     | 교권침해관련<br>특별휴가 |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의 회복 지원<br>▶ 상해 폭행 및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교원은 5일 추가 가능  | 5일 이내  | ×                     |
| 육아시간     | 만 8세 또는 초2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교원<br>▶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br>(※ 남성 교원도 가능, 동일 자녀 남녀 교원 동시 가능)   | 1일<br>(2시간) | ×                     | 장기재직휴가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br>▶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7일   | 5일(7일) | ×                     |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br>▶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 시 승인 의무화  | 1일<br>(2시간) | ×                     |                |   |        |                       |

## 복무

### 특별휴가 - 육아시간

- 모성보호시간(2시간)과 육아시간(2시간)은 동시 사용 불가
- 시간외 근무 신청 가능 여부
  - 모성보호시간: 불가
  - 육아시간: 가능(2024. 11. 8. 개정)
- 육아시간 계산방식
  -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개정(2023. 1. 1.) 이전 사용한 육아시간은 개정 전 계산방식(1개월 단위 계산)에 따라 계산

## 복무

### 특별휴가 - 가족돌봄휴가

- 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 돌봄이 필요한 교원
  - 유급: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의 자녀)수 **+1일**(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 무급: 유급 휴가 포함 10일 이내(일단위 사용만 가능)
  - **증빙서류 제출(나이스 등록) 필수: 복무 감사 지적 사항**

## 복무 Q&A

자녀의 수능 예비소집일 동행, 대입 실기·면접·논술시험 동행 등은 가족 돌봄휴가에 해당할까요?

- ☑ 수능, 대입 실기, 면접, 논술시험은 **학교가 주최하는 공식행사가 아니므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복무 Q&A

성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 ☑ 다만, 자녀가 성인이지만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경우** 라면, 해당 학교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유급 휴가 사용이 가능
- ☑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더라도 병원 진료에 동행하거나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복무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 겸직허가 대상(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심사 대상임)
  - **영리업무**(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 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되는 영리업무' 는 겸직 불가
  - 비영리 업무 중 **계속성**이 있는 업무
- 허가기간은 **최대 2년**이나, 사교육 관련 겸직 및 인터넷 개인미디어 관련 허가기간은 최대 1년임
- 교원의 과외 교습 제한

## 복무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 겸직심사위원회 **필수** 심사대상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학교 기출 문제 활용 등 포함)
  5.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6.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등 포함)
-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

## 복무 관련 참고 자료

- ☑ 교원의 **휴가 관련** 질의·답변  
자료집(2026. 3.)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2025. 7.)



## 징계

### ○ 관련 자료

- 사립학교법 제4장 제3절 징계 및 동법 시행령,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 2025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 2023 사립학교 교원 징계 업무 표준 매뉴얼(서울특별시교육청)
- 징계업무편람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 ○ 사립교원 인사관리 관할청

- 초등학교: 소속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 중학교: 소속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 고등학교·특수학교: 본청 중등교육과 사립교원인사관리팀

## 징계

###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법령에 근거(사립학교법 제61조~제67조)

- 징계양정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준용(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법률위반공무원 업무처리 매뉴얼(서울특별시교육청-감사관 부서업무방)**

### ○ 징계사유(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1.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징계



###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상설위원회

- 사립학교법 제 62조 확인, 법령에 맞게 설치 및 구성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 7, 8, 9, 11



### 징계절차

- 인사실무편람 151페이지, 교원징계업무 표준매뉴얼 15페이지



### 징계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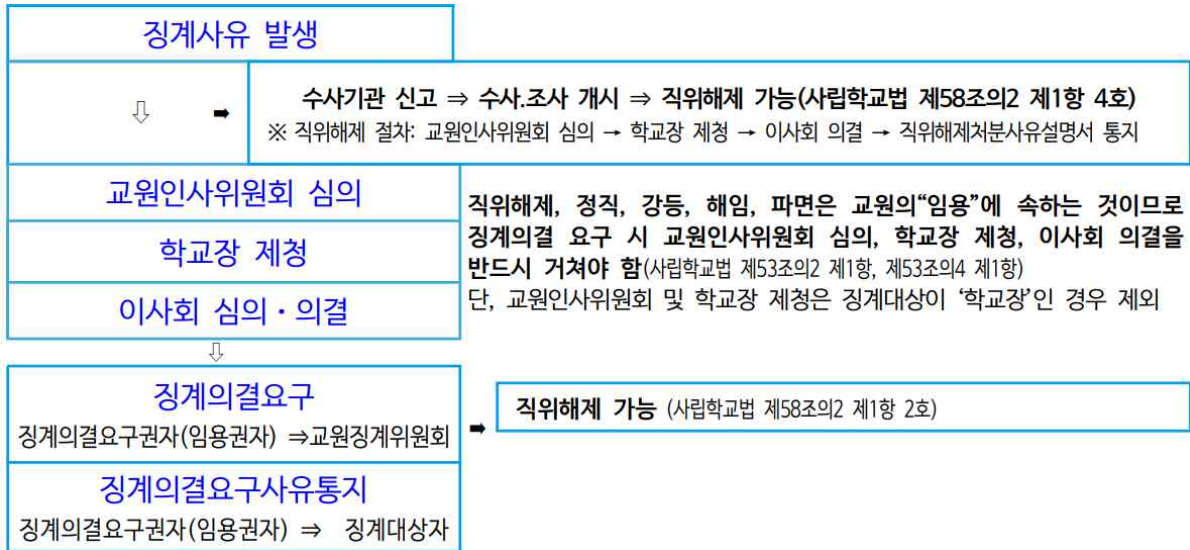
초·중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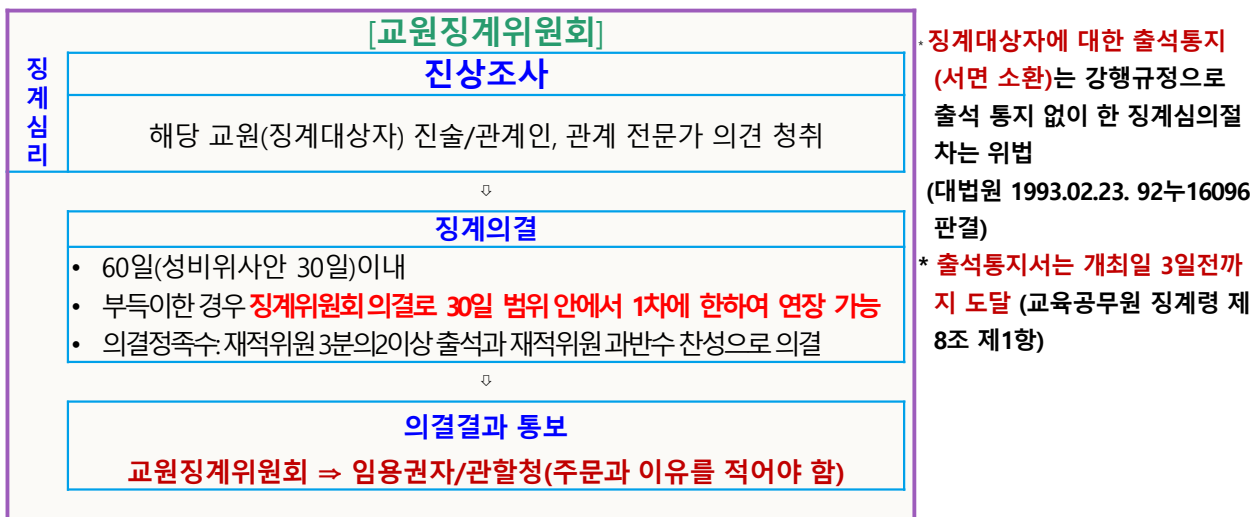
(지원청) 초·중등교육지원과

본청 중등교육과(감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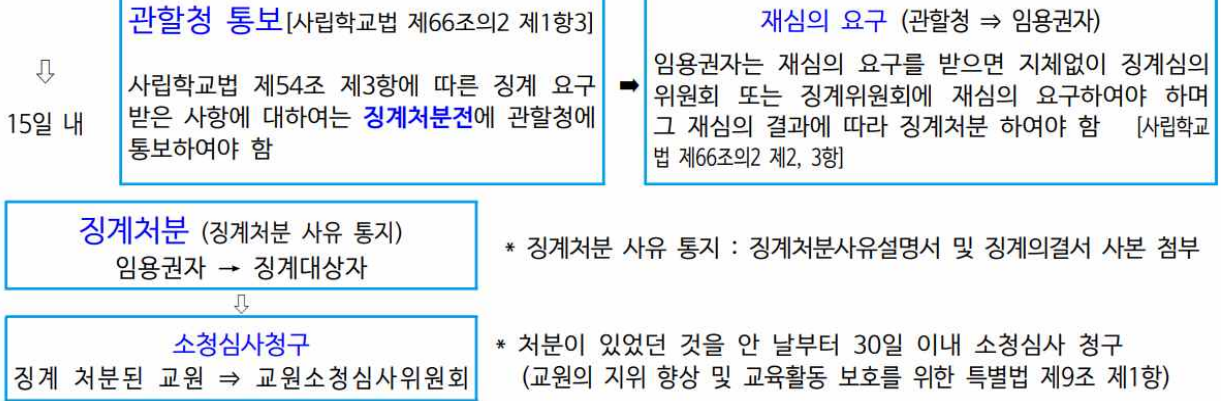
## 징계 – 징계절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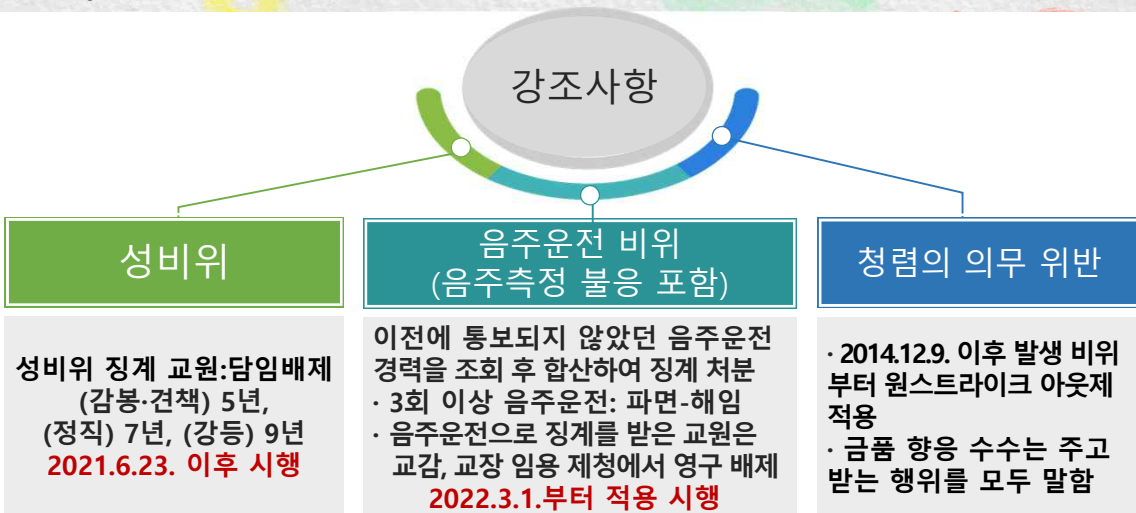
## 징계 – 징계절차2



## 징계 – 징계절차3



## 징계



# 징계 Q&A

## 징계 처리 결과 나이스 입력 방법은?

☑ 나이스 >> 교원인사 >> 징계 >> 징계처분관리 >>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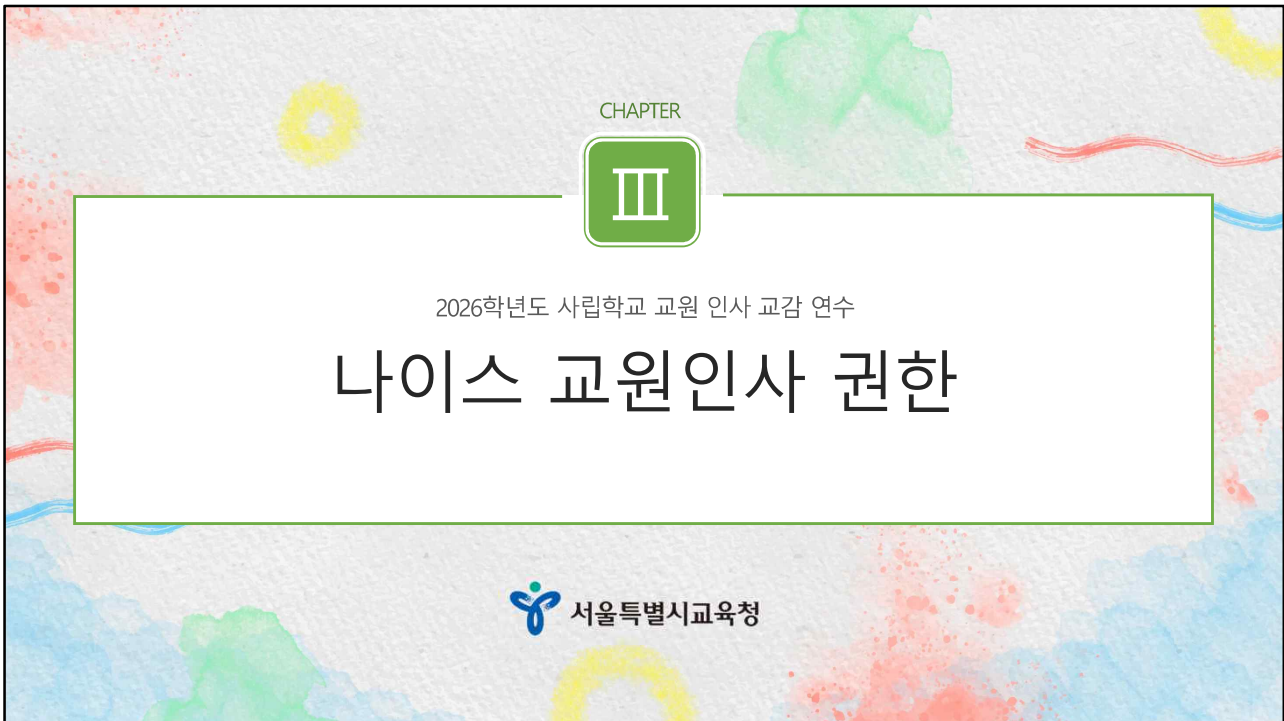
# 징계

징계처분등록

## 징계처분 등록

징계처분내역    징계의결요구내역

|         |                      |         |                      |
|---------|----------------------|---------|----------------------|
| *성명     | <input type="text"/> |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text"/> |
| 소속      | <input type="text"/> | 직급      | <input type="text"/> |
| 징계처분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직위      | <input type="text"/> |
| *징계처분결과 | <input type="text"/> | 의결통고일   | <input type="text"/> |
| *징계처분일  | <input type="text"/> | 징계종료일   | <input type="text"/> |
| 승급제한종료일 | <input type="text"/> | 징계말소예정일 | <input type="tex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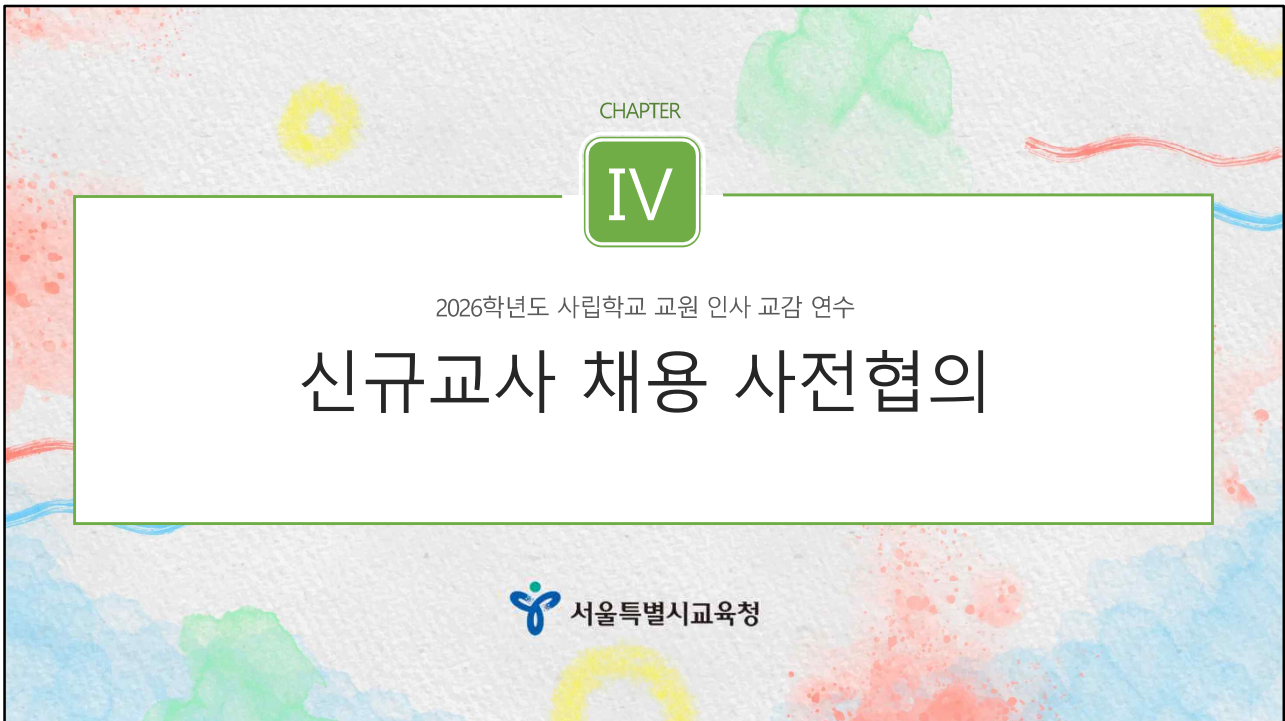
2026 사립학교 교원 인사 교감 연수

## 나이스 교원인사 권한

### 교원인사 권한 관리

- **[교원인사] 권한 인사 변동 시 학교에서 신청**
  - 권한부여자 = 교감(학교당 1명만 1년씩 부여, 직무대리는 6개월 부여)
  - 신청방법: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제출**(사립교원인사실무편람 p.255~256 참고)  
(고,특수학교)본청 중등교육과, (중학교)소속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 ♣ **학교 인사업무담당자에게 권한 부여 방법**
  - 교원인사 권한소유자(교감) : [시스템관리] <개인별권한등록>에서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인사기록 권한 부여



## 신규교사 채용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2021.9.24. 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규교사 채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2022.3.22. 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의 **시기,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 신규교사 채용

### 사전협의

#### 사전협의 계획 수립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학교>
  - 신규채용 과목 및 인원 수요 조사
  - : 교육과정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 수립
  - 사전협의 계획 수립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학교장 제청(법인 제출)

#### 이사회 의결, 사전협의 신청 및 확정

- <법인>
  - 사전협의 계획 수립
  - 이사회 심의의결
  - 사전협의 신청서 제출
- <교육청>
  - 사전협의 결과 통보
- <법인-필요 시 의견 제출>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제출

#### 참고사항

- <포함>
  - 과목명
  - 채용인원
  - 채용방법(위탁/자체승인)
  - 그 밖에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

## 신규교사 채용

### 채용절차

#### 공개전형 계획 수립

- <법인>
  - 공개전형 계획 수립 (학교는 법인과 협의)
- <학교>
  - 인사위원회 심의 : 임용절차, 방법, 심사기준 등
  - 학교장 제청
- <법인>
  - 이사회 의결(채용절차 확정)

#### 공개전형

- 공고: 지원마감 30일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 1차 필기시험 위탁 실시
  - ※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1차부터 자체전형 실시
- 2차 전형 실시
  - : 평가위원은 1/3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

#### 임용절차

- 적격심사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임용 제청
- 이사회 의결
- 임용 후 7일 이내 관할청에 보고

## 신규교사 채용

### 참고 사항(발취)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전체 필독)

- 채용업무 제척기준 확인(24쪽)
  - 4촌 이내의 혈연 등 특수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우리 학교 채용전형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형 담당자로서 업무를 담당할 수 없고, 담당자 중 인지한 경우 즉시 보고하고 업무에서 배제된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등 법적 가점 기준 적용 등(42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실기, 면접시험 채점비율은 공립기준 준용 권고(61쪽)
- 전형 단계별로 결과 발표, 최종차수 합격자의 미임용 불가(79쪽)
- 기타: 교육청 평가위원 인력풀 활용

## 신규교사 채용

### 업무 지원

#### 미리 찾아가는 신규채용 컨설팅

- 2027학년도 신규채용 예정교  
중 컨설팅 희망 학교(법인)
- 채용절차 및 법정사항 안내
  - 2차 전형 출제 및 운영방법 안내 등

#### 2차 외부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

- 외부 평가위원 위촉
- 평가위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인력풀 공유

#### 재정 지원

- 1차 위탁 채용교 2차 전형비  
(목적사업비) 차등 지원
- 출제수당, 평가수당,  
운영수당, 학교운영비 등

신규교사 채용교 학교운영비  
지원

## 신규교사 채용

### 재정 지원

1

#### 학교운영지원비

- 당해연도 신규교사 위탁선발 학교
  - 예정 인원 100% 선발 또는 일부 선발
  - 2차 전형 외부위원 비율 1/3 이상 구성
- 지원시기: 4월
- 신규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2

#### 신규채용 전형비

- 차년도 신규채용 진행교
  - 평가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 및 출제수당 등
  - 학교운영비: 전형 준비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및 신규교사 새학기 준비 물품 등
- 지원시기: 11월

# 신규교사 채용

## 업무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새소식/공지** > 시험안내 > **교원임용시험안내**

**새소식/공지**

교원임용시험안내

전체 518건 (2 / 52)

|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시       | 조회수   |
|-----|--|-----|------------|-------|
| 508 | [최종]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연령 알림                     | 박형용 | 2023-10-20 | 26984 |
| 507 | [3일차]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연령 알림                    | 박형용 | 2023-10-19 | 9426  |
| 506 | [2일차]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연령 알림                    | 박형용 | 2023-10-18 | 6663  |
| 505 | [1일차]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연령 알림                    | 박형용 | 2023-10-17 | 7694  |
| 504 | [최종 접수연령]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국·사립) 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  | 강희상 | 2023-10-12 | 9425  |
| 503 | [4일차 접수연령]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국·사립) 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 | 강희상 | 2023-10-06 | 4428  |

# 신규교사 채용

## 업무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청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개 > 조직도 > **중등교육과** > 부서업무방 > **2025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 게시**

**부서업무방**

HOME > 부서업무방

전체 4건 (1 / 1)

| 순번 | 제목                              | 부서명   | 작성일        | 조회수  |
|----|---------------------------------|-------|------------|------|
| 4  | 2025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 안내       | 중등교육과 | 2025-08-21 | 1039 |
| 3  | 2024년(2025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 | 중등교육과 | 2024-08-06 | 5383 |

## 신규교사 채용 Q&A

### 1. 필기시험

필기시험 출제 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데  
필기시험 채점 시에도 외부위원을 위촉해야 하는지?

- ☑ 필기시험 채점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채용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인에서 자율 결정함

### 2. 2차 전형

2차 전형 외부위원 위촉 및 수당 예산 지원 여부

- ☑ 외부위원 인력풀 구성 및 공유 예정
- ☑ 2차 전형비와 학교운영비 지원 예정-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 ☑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기준은 추후 안내되는 공문 확인
  - 안내되는 기준대로 집행
  - 회차별 지급 가능

## 신규교사 채용 Q&A

### 3. 승인기준

사립초등학교 신규교사 채용의 승인기준이 있는지?

- ☑ 정원 범위내, 정년퇴직자 (예정)인원 확인
- ☑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의 결원 고려

### 4. 2차 전형

2차 전형 외부위원 선임 관련 정확한 기준은?

- ☑ 외부위원은 ' 다른 학교법인(기관) 교원, 그 외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채용교과의 평가가 가능한 자 '
- ☑ 법인 내 소속 초등-중등을 달리하는 교원으로 운용 가능
- ☑ 교사, 대학교수 등 전문성 있는 자격을 갖춘 학부모
- ☑ 같은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 소속 교원 등
- ☑ 학교법인 임원(관계자) 및 소속 학교의 (퇴직)교원은 외부위원이 될 수 없음

## 신규교사 채용 Q&A

### 5. 외부위원

본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가 응시할 경우 출제위원과 심사까지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 ☑ **가능하면 전체 외부위원 위촉을 권장하나, 전체 외부위원 구성이 어려운 경우 평가 외부위원을 1/3이상으로 최대한 많은 수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 6. 2차전형

서류전형 평가에도 전형위원의 1/3 이상이 외부위원이어야 하나?

- ☑ **서류전형 평가는 법인에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신규교사 채용 Q&A

### 7. 전형(안) 작성

신규교사 채용 시 전형은 누가 초안을 만드는가?

- ☑ **법인마다 전형 실무 진행 방법이 다름**
- ☑ **임용권자가 법인이므로 법인에서 총괄**

### 8. 2차전형

사립초등학교(인건비 미지원교) 신규교사 채용 시 사전협의 과정이 필수인지 선택인지?

- ☑ **법령에 따라 교육감과 사전협의 의무 사항임**

## 신규교사 채용 Q&A

### 9. 2차 전형 자체채용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는?

- ☑ 교육감 승인을 받아 1차부터 자체선발이 가능한 학교인데 1차를 위탁선발한 경우 2차 전형비(평가수당, 운영수당 등) 지원 예정
- ☑ 자체선발 학교의 경우, **2차 외부 평가위원 수당만** 일부 지원 예정

### 10. 면접 2차 전형 이후 학교장 또는 이사장 단독 면접 실시 여부?

- ☑ 학교장 또는 이사장 단독 면접 후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사례는 학교장 또는 이사장이 합격자 선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함
- ☑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에 부합하지 않음

CHAPTER

V

2026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인사 교감 연수

# 신규교사 위탁 선발 실무

## 위탁 선발 절차 및 방법

### 교육청

- 사립학교법인 신규교사 위탁선발 사전 협의 (과목 및 인원을 사립교원인사관리팀과 협의)
- 위탁선발 사전협의 법인 대상 위탁 방법 등 수요조사  
- 위탁 방법: 공·사립 동시지원제, 사립 복수지원제 택1  
※ 초등과 중등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은 위탁방법을 초등·중등 각각 선택 가능
- 사립학교법인 신규교사 위탁선발 법인 확정
- 위탁선발은 공립(초·중등) 교원 임용시험과 병행 실시  
- 원서접수 및 제1차 필기시험 동시 시행
- 제1차 시험 결과 선발인원의 3~5배수 합격자를 선발하여 학교법인에 통보

### 학교법인

- 교육청에서 통보된 제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2차 시험(수업실연, 면접 등) 자체 시행
- 최종합격자 신규임용



## 위탁 선발 절차 및 방법

### 신규교사 위탁 선발 방법

| 구 분        | 위탁 방법   |  |
|------------|---|--|
|            | 공·사립 동시지원제  | 사립복수지원제  |
| 응시자 원서접수방법 | ① 공립만 지원<br>② 공립(1순위)+사립(2순위)<br>③ 사립만 지원   | ① 사립만 지원<br>② 사립(1순위)+사립(2순위)  |
| 합격자 결정방법   | 【택1】  |  |
|            | 【①공립만지원】과 【②공립(1순위)+사립(2순위)】의 공립 합격자를 제외하고 【②공립(1순위)+사립(2순위)】 + 【③사립만 지원】 지원자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br><br>공립합격자 제외<br>사립만 지원자 우선하지 않음 | 【①사립만 지원】 + 【② 사립(1순위)】 지원자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합격 결정<br><br>※ 선발 배수 미달의 경우<br>【② 사립(1순위)+사립(2순위)】 지원자 중에서<br>② 사립(1순위) 사립합격자를 제외하고<br>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 <위탁방법>

- \* 원칙: 위탁방법은 법인별로 공사립동시지원제와 사립복수지원제 중 1가지만 선택
- \* 단, 초등(특수(유), 특수(초) 포함)과 중등(특수(중등) 포함)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은 초등 위탁 방법과 중등 위탁 방법을 각각 다르게 선택하여 위탁 가능

## 2026학년도 운영 현황

### 2026학년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위탁 선발 1차 합격 현황

| 연번    | 위탁 법인수 | 선발 분야 | 선발 예정인원 | 선발 배수 | 위탁방법       | 1차 합격 예정인원 | 응시 인원 | 1차 합격인원 | 선발배수 부족 | 비고                    |
|-------|--------|-------|---------|-------|------------|------------|-------|---------|---------|-----------------------|
| 1     | 1      | 초등    | 2       | 5     | 공·사립 동시지원제 | 10         | 97    | 10      | 0       |                       |
| 2     | 4      | 초등    | 5       | 5     | 사립 복수지원제   | 25         | 25    | 10      | -15     |                       |
| 3     | 1      | 특수(유) | 1       | 5     | 사립 복수지원제   | 5          | 4     | 1       | -4      |                       |
| 4     | 1      | 특수(초) | 5       | 5     | 공·사립 동시지원제 | 25         | 48    | 3       | -22     |                       |
| 5     | 4      | 특수(초) | 7       | 5     | 사립 복수지원제   | 35         | 20    | 3       | -32     |                       |
| 6     | 33     | 중등    | 128     | 5     | 공·사립 동시지원제 | 640        | 2,728 | 445     | -150    | 국어, 수학, 물리 등 총 13개 과목 |
| 7     | 47     | 중등    | 143     | 5     | 사립 복수지원제   | 715        | 1,633 | 442     | -273    | 국어, 수학, 특수 등 총 20개 과목 |
| 80개법인 |        |       | 291     |       |            | 1,455      | 4,555 | 914     | -496    |                       |

<선발배수 미달 법인 수: 55개 법인>

\* 초등: 4개(사립복수, 100%), 특수(유): 1개(사립복수, 100%), 특수(초): 5개(공사립동시, 사립복수, 100%)

\* 중등: 33개(공사립동시, 100%), 47개(사립복수, 100%) \*과목별로 상이

## 2027학년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일정

### 2027학년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일정(안)

| 내용                                      |                   | 시행일                       | 비고   |
|---|-------------------|---------------------------|--|
| 공 고                                     |                   | 2026. 9. .( )             | 교육청은 교육청누리집(새소식/공지-시험안내-교원임용시험안내)에 공고<br>법인은 교육청 누리집(서울교육일자리포털) 및 학교 누리집에 공고                   |
| 원 서 접 수(인터넷 접수)                         |                   | 2025. 10. .( ) ~ 10. .( ) | 서울시교육청<br>[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 <a href="http://edurecruit.go.kr">http://edurecruit.go.kr</a> ) |
| 제1차시험                                   |                   | 2025. 11.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위탁  |
| 위탁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br>법인 제2차시험 일정 등 공고 |                   | 2025. 12. .( )            | 교육청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교육청누리집<br>(새소식/공지-시험안내-교원임용시험안내)에 공고<br>법인은 제2차 시험 일정 장소 공고 등을 학교 누리집에 공고      |
| 제2차<br>시험                               | 실기·실험(중등만)        | 2026. 01. 00.( )          | 법인 일정에 따라 자체 진행  |
|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 2026. 01. 00.( )          | 법인 일정에 따라 자체 진행  |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2026. 01. 00.( )          | 법인 일정에 따라 자체 진행  |
| 최종 합격자 발표                               |                   | 2026. 02. 00.( )          | 법인은 학교 누리집에 공고   |

<학교법인 신규교사 채용 선발 공고>

\*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공고(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 공고명에는 사립학교장이 아닌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 임용시험 전형 관련 주요 안내

### 채용공고 시 유의사항(1/2)

-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공고(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 공고명의로는 사립학교장이 아닌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 전형료 징수 불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고 시 학교법인 모집인원을 표시과목 별로 기재하고, 임의로 인원을 조정하여 채용 불가하며, 법인의 학교가 2교 이상인 경우에도 법인 명의로 채용하여 발령

## 임용시험 전형 관련 주요 안내

### 채용공고 시 유의사항(2/2)

- 서울시교육청 임용시험 공고 시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 신청 가능" 함이 명시됨
- 공립의 경우 제1차 시험은 과목별 과락(40% 미만 득점, 국·공·사립 동일하게 적용), 제2차 시험은 과락이 없기에, 학교법인이 제2차 시험 과락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

## 임용시험 전형 관련 주요 안내

### [참고] 공립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제2차시험의 성적(가점 제외)이 높은 사람
- 3순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복무만료) 예정자 포함)
- 4순위: 수업실연 성적이 높은 사람
- 5순위: 심층면접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제1차 시험(초등: 교육과정, 중등: 전공)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제1차 시험(초등: 교직논술, 중등: 교육학) 성적이 높은 사람

## 임용시험 전형 관련 주요 안내

### 시험진행 관련 유의사항(1/2)

- 공고문에 규정한 것과 다른 시험운영 및 채점, 일정 변경 등을 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재공고
- 법인회계로 전형비용을 집행하여야 하며, 교비회계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음
- 답안지 및 문제지는 10년간 보관
- 실기시험 및 면접 등의 평가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공립은 3명으로 구성)
- 응시자 중에서 해당학교 기간제 교사가 포함된 경우, 수업실연 및 면접 시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

## 임용시험 전형 관련 주요 안내

### 시험진행 관련 유의사항(2/2)

- 출제위원은 출제기간 및 시험 당일 시험시작 1시간 이후 격리 해제
  -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을 겸임할 경우 채점 종료 시까지 격리
- 교수·학습과정(지도)안 작성, 실기(수업실연 등) 및 면접시험 시 수험번호가 아닌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시험 실시
- 실기(수업실연 등) 및 면접시험 시 응시생의 대기장소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 공간에서 시험 실시
  - 예) 응시생이 5명인 경우 동일한 대기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입실하게 한 후 관리번호를 추첨하여 부여하고, 관리번호별로 시험에 응시

## 임용대상자 적격심사 관련 안내

### 임용대상자 적격심사 관련 법령

- 결격사유 조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항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및 제4항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채용신체검사 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제1조의2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 임용대상자 적격심사 관련 안내

## 적격심사 의뢰처 및 방법

| 구분             | 결격사유조회  | 성범죄<br>경력 조회   | 아동학대관련<br>범죄 조회 | 장애인학대 관련<br>범죄 조회 | 공무원채용<br>신체검사                        | 마약·대마·향정<br>신성의약품 중독<br>여부                   |
|----------------|---|--|-----------------|-------------------|--------------------------------------|--|
| 법인이 의뢰         | 등록기준지<br>시·군·구·읍·면장   | 경찰서장   |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br>( <a href="https://www.share.go.kr">https://www.share.go.kr</a> )<br>이용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br>( <a href="https://crims.police.go.kr">https://crims.police.go.kr</a> ) 이용 |                 |                   |                                      |  |
| 임용예정자<br>제출 서류 | 동의서   |  |                 |                   | 의원, 병원,<br>종합병원에서<br>발급한 신체검사<br>확인서 | 검사 가능<br>의료기관에서<br>발급한 검사결과<br>통보서<br>또는 진단서 |

### <적격심사 유의사항>

- \*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차수 시험일로 공고문에 명시
- \* 적격심사 이전에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 보관

# 위탁 선발 관련 Q&A

## 1. 위탁 선발 방법

법인별 위탁방식을 일원화하지  
않고 법인별, 학교급별로  
위탁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지?

Question

Answer\*

### <위탁방법>

#### \* 원칙

위탁방법은 법인별로 공·사립 동시지원  
제와 사립복수지원제 중 1가지만 선택  
단, 초등(특수(유), 특수(초) 포함)과 중등  
(특수(중등) 포함)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은  
초등 위탁 방법과 중등 위탁 방법을  
각각 다르게 선택하여 위탁 가능

## 위탁 선발 관련 Q&A

### 2. 위탁 선발 방법

공·사립 동시지원제에서  
'공립 1지망 + 사립 2지망' 외에  
'사립 1지망 + 공립 2지망'도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Question

Answer

검토 필요

- 실제 운영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사립1지망+공립2지망' 지원제는  
운영하지 않을 예정

## 위탁 선발 관련 Q&A

### 3. 위탁 선발 방법

1차 전형은 모두 교육청 위탁 전형  
으로 전면 실시가능한지?

Question

Answer

임용시험 시·도공동관리위원회에서  
매년 결정된 34개 과목만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에서 출제가능하여 모든  
과목을 위탁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람

## 위탁 선발 관련 Q&A

### 4. 위탁 선발 방법

동일 법인 산하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모두 있을 때,  
지원자가 희망 학교급을  
선택할 수 없는지?

Question

Answer

동일 법인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법인 이사장이 최종합격자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임용(발령)

## 위탁 선발 관련 Q&A

### 5. 위탁 선발 방법

사립, 공립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위탁 선발 제1차 시험에서  
사립, 공립 두 가지로만 선발(사립,  
공립 복수 지원 제도 폐지)하는  
위탁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

Question

Answer

- [공립만 지원]과 [사립만 지원] 선발 방식은 2012~2015학년도까지 운영하던 방식으로 2016학년도부터 공·사립 동시 지원제 선발 방식 도입
- 사립 전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인의 다양한 위탁 방법과 지원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2023학년도부터 사립 복수지원제를 도입한 현재 위탁 방법과 원서접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 위탁 선발 관련 Q&A

### 6. 위탁 선발 방법

사립학교 합격자 결정 방법을  
공립과 같이 과목별로 사립학교법인  
전체의 선발 인원을 합하여  
3~5배수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 중에서 합격자가 법인별로 2차  
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전형을 실시  
할 수 없는지?

Question

Answer

현 시스템은 사립학교법인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17개 시·도가 동일하게 사용 중인  
시스템으로 과목별로 사립학교법인의  
선발 인원을 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

## 위탁 선발 관련 Q&A

### 7. 위탁 선발 방법

과목별로 위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없는지?

Question

Answer

위탁 방법을 과목별로 선택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불가함을 양해바람

## 위탁 선발 관련 Q&A

### 8. 위탁선발 방법

2차 전형(수업실연 및 면접)에서  
교육청 위탁 또는 학교 자체로  
선택할 수 없는지?

Question

Answer

2차 전형의 교육청 위탁 선발은  
현재로는 시행이 불가하며,  
향후 추가 검토 필요

## 위탁 선발 관련 Q&A

### 9. 채용 방법

채용 방법을 사립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Question

Answer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탁채용 의무화  
법령에 따라 채용방법을 자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위탁 선발 관련 Q&A

### 10. 채용 방법

위탁 선발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여러 법인의 제2, 3차 시험에  
지원할 수 없는지?

Question

Answer

제1차 시험 지원 시 법인을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1차 시험 합격자가  
여러 사립법인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불가

## 위탁 선발 관련 Q&A

### 11. 채용 방법

교육청 위탁 선발이 어려운  
소수 과목들은 사립학교 연합,  
혹은 자체 채용할 수 없는지?

Question

Answer

우리교육청 사립교원인사관리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 받은 후  
채용 가능

## 위탁 선발 관련 Q&A

### 12. 선발 배수

제1차 시험 합격자 선발 배수를  
상향할 수 없는지?

Question

Answer

현재 3~5배수임에도 미달 법인이 많아  
선발 배수 상향은 시기상조임.  
또한 선발 배수 상향은 일부 법인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

## 위탁 선발 관련 Q&A

### 13. 선발 배수

공립학교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배수를 1.5배수에서 1.2배수로  
하향할 수 없는지?

Question

Answer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합격자의 결정) 제1항  
-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한다.  
- 따라서, 공립 1차 합격자 배수를 1.5배  
에서 1.2배로 낮추는 것은 불가

<참고: 각종 임용시험에서의 선발 배수 관련 법령>

1. 1.5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3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2. 3배수: 지방공무원법 제37조 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1호

## 위탁 선발 관련 Q&A

### 14. 시험 문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2차(수업 실연) 시험 문제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지?

Question

Answer

수업실연 문제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시험 전날 전달받고 있어 법인에 제공할 수 없음

## 위탁 선발 관련 Q&A

### 15. 시험 문제

위탁 선발 제1차 시험 문제에 사립학교 건학이념에 맞는 선발기준을 반영할 수 없는지?

Question

Answer

제1차 시험은 전국 공통이며, 교육학과 전공과목 문제 출제로 건학이념을 문제로 출제할 수 없음

## 위탁 선발 관련 Q&A

### 16. 기타

"최종합격자의 3.1.자 임용 시  
군복무 미필자는 응시할 수  
없음"이라고 임용시험 공고할  
수 없는지?

Question

Answer

- 공립은 최종합격자가 3.1.자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 유예
-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등에도 군복무 중인 자의  
임용시험 응시 제한 규정은 없음
- 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사항  
가. 응시자격증 소지자(임용연도 2월말 취득 예정자)  
나. 응시연령(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제한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자

CHAPTER

VI

2026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인사 교감 연수

교장 자격인정, 교장·교감 자격연수,  
교장·교감 임용

## 교장 자격인정

###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1항 관련 [별표1] 교장·교감 자격기준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제1항 [별표2] 교(원)장 자격인정기준
  -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 ※ 위 법에 근거하여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는 교장 자격인정을 적용하지 않음

## 교장 자격인정

### 근거 법령 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1항 관련 [별표1]

| 교 장 자 격 기 준 |  |
|-------------|--|
| 1.          |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2.          |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
| 3.          |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4.          |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
| 5.          |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 제1항 관련 [별표2]

| 교 장 자 격 인 정 기 준 |  |
|-----------------|--|
| 1.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br>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br>다. 9년 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 2.              | 15년 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 교장 자격인정

###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사립학교 교장 임용 예정자

| 구분  | 임용예정일                            | 신청 안내        |
|-----|----------------------------------|--------------|
| 상반기 | 당해 3월 1일 자 또는 9월 1일 이전 임용예정자     | 매년 11월 공문 시행 |
| 하반기 | 당해 9월 1일 자 또는 다음해 3월 1일 이전 임용예정자 | 매년 5월 공문 시행  |

※ 상·하반기 정기 신청 및 발급 실시

- 신청 기준

- 1) 연령기준: 법인이 아닌 경우 교육공무원의 정년(62세) 내에 있는 자
- 2) 근거 규정에 적합한 자
- 3) 부관 이행이 가능한 자

## 교장 자격인정

### 부관(附款)

- 자격기준 21-1-2에 의한 교장 인정자격 부여 시 부관 설정
- 부관: 법률 행위에 따라 생기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덧붙이는 조건이나 기한 따위의 제한
- 부관 내용: 임용시기, 계속근무, 자격연수
- 부관 이행 후 삭제: **4월과 10월에 부관 삭제 관련 안내 공문 시행 예정**
- 부관 미이행 시 자격 취소: 자격증 발급된 후 부관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단, 연수 규모 및 수용 인원의 한계로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유예 가능

## 교장 자격인정

### 제외 기준

-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 4대 비위로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기록 미말소자
  - 4대 비위: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포함), 성적조작
  - 징계기록 말소기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교장임용 제청기준 강화방안(교육부, 2014. 2.)
- 2022. 1. 1.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자,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 처분을 받은 경우를 의미
- 학내분규 및 민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격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확인 후 선정에서 제외
- 자격연수 이수 후 임기가 1년 미만인 자 또는 정년(교육공무원 정년 기준 62세) 잔여 기간 1년 미만인 자(자격연수 면제 대상은 해당 없음)

## 교장 자격인정

### 신청/추진 시기

- 전년도 운영 시기

|          | 신청 안내 공문      | 제출기한        | 자격증 발급      |
|----------|---------------|-------------|-------------|
| 2025 하반기 | 2025. 5. 19.  | 2025. 7. 3. | 2025. 9. 1. |
| 2026 상반기 | 2025. 11. 10. | 2026. 1. 9. | 2026. 3. 1. |



## 교장 자격연수

### 추천 대상(기준)

- 부관 이행 대상자(전년도 자격인정 발급자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 교감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아닌 경우  
교장 자격연수 이수와 별개로 자격인정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자격연수 이수와 동시에 자격증 발급 대상자가 아님)

## 교감 자격연수

### 추천 대상(기준)

- 한국사 능력의 검정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 인정 연수기관에서 임용일(교사 신규채용) 이후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 이수자

## 교장 자격연수

### 중등 교장 자격연수 일정(예정)

|      | 국가정책과정          | 시도정책연수              | 본연수   |
|------|-----------------|---------------------|---|
| 운영기관 | 중앙교육연수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 고려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
| 운영시간 | 12시간            | 12시간                | 132시간 + 48시간  |
| 운영기간 | 4.6.(월)~4.7.(화) | 6.29.(월) ~ 6.30.(화) | (국내) 7.6.(월)~8.5.(수)<br>(국외)<br>• 5.8.(금)~5.19.(화) 기간 중 7일<br>• 5.15.(금)~5.26.(화) 기간 중 7일<br>• 5.29.(금)~6.9.(화) 기간 중 7일 |

※ 국외과정 사전연수: 2026. 4. 21.(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 교감 자격연수

### 중등 교감 자격연수 일정(예정)

- 대상자 면접: 2026. 4. 11.(토)
- 연수기간: 2026. 4. 27.(월) ~ 6. 5.(금) (102시간, 오후제)
  - ※ 기간 중 현장체험 2박 3일 포함(5. 28.(목)~5.30.(토), 5.31.(일)~6.2.(화))

## 교장·교감 자격연수

### 초등 교장·교감 자격연수 일정(예정)

- 교장 자격연수: 2026. 5. 11.(월) ~ 6. 26.(금)
- 교감 자격연수: 2026. 6. 29.(월) ~ 7. 22.(수)

## 교장 임용

### 임용 절차

교장 자격증 취득

이사회 의결

임용권자 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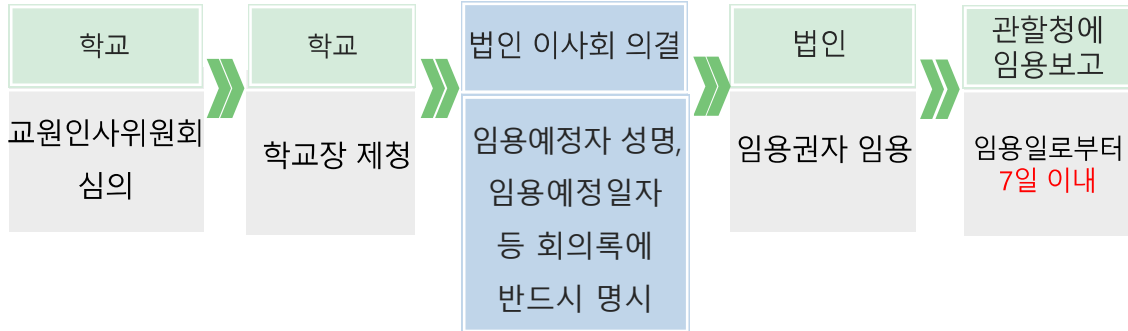
관할청에 임용보고

임용예정자 성명,  
임기 등 회의록에  
반드시 명시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

## 교감 임용

### 임용 절차



## 교장·교감 직무대리

###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항

### 지정 사유

- 교장(감)이 결원 또는 유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차상위 직급자로 하여금 잠정적으로 그 직무를 대리케 하여 학교운영의 안정화를 기함
  1. "직무대리"라 함은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교장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함
  2. "사고"라 함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교장(감)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교장·교감 직무대리

### 지정 원칙 및 유의사항

- 지정 기간: 6개월 이내로 함
- 업무 수행: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하고 있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지정 순서: **직무대리는 직제순에 의하여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장(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임명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위에 임명
- 직무대리자 지정 시 7일 이내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 교장(감) **직무대리자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임용 시 인건비 지원 불가**

## 업무 참고 자료

### 목록 및 탑재 위치

-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 사립학교 교원징계업무 표준매뉴얼(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3)
  -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3-4, 2023.7.1.)
- ⇒ 탑재 위치: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부서홈페이지 (중등교육과) > 부서업무방